



“더 큰 이웃을 향한 이해와 나눔”

사단
법인

더큰이웃아시아

(우 18390)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18(진안동) 전화 (031)267-1526 전송 (031)267-1548

문서번호 : BFA-18-102호

시행일자 : 2018. 2. 14.

수 신 : 각 회원님께

제 목 : 제8차 정기총회 소집 건

1. 지난 한해동안 우리 법인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.

2. 본 센터 정관 제18조 3항에 따라,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,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□□ 아 래 □□□

(1) 내용 : (사)더큰이웃아시아 제8차 정기총회

(2) 일시 : 2018년 2월 24일(토요일) 오후 2시

(3) 장소 : 아시아 공동체 밥집&카페 ‘바다건너’
(화성시 떡전골로 111, 2층)

(4) 회의안건 :

- 안건 1 : 2017년 사업보고
- 안건 2 : 2017년 회계결산 및 감사 보고
- 안건 3 : 2018년 사업계획(안) 심의
- 안건 4 : 2018년 예산(안) 심의
- 안건 5 : 법인 정관 개정
- 안건 6 : 법인 임원 선출
- 안건 7 : 기타 토의

*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은 위임(이메일, 팩스, 우편) 바랍니다.

(이메일 : amcc@hanmail.net, 팩스 : 031-267-1548)

붙임 : 위임장 1부. 끝.

사단
법인

더큰이웃아시아 이사장



<붙임>

(사)더큰이웃아시아 제8차 정기총회

위 임 장

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,
본인이 가진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.

- 회 의 명 : 제8차 정기총회
- 일 시 : 2018. 2. 24(토) 14:00 ~
- 장 소 : 아시아 공동체 밥집&카페 '바다건너'
- 위임내용 : 참가자들의 표결 결과에 따르겠습니다.

2018년 2월 일

위임자 성명 : (인/서명)

(사)더큰이웃아시아 이사장 귀하

※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께서는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☞ 이메일 : amcc@hanmail.net

☞ 팩스 : 031-267-1548

☞ 주소 : (우 18390) 화성시 떡전골로 118(진안동)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

☞ 문의 : ☎ (031) 267-1526

법인 정관 개정(안)

조항	현행	개정(안)	개정 이유
제2조(목적)	이 법인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함으로써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법인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함으로써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, <u>이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</u> , 나아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법인의 ‘(예비)사회적기업’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정관상 요건을 갖추기 위함.
제4조의 2(수익사업)	< 신설 >	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②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	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	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이사장 1인 2. 상임이사 1인 3. 이사(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 7인 4. 감사 2인	----- -- 1. ----- 2. ----- 3. 이사(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 <u>5인 이상 10인 이하</u> 4. -----	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서 향후 (예비)사회적기업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자 함.
제34조(재원)	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비 2. 각종 기부금 3. <u>각종 사업의 수익금</u> 4. 기타 수입	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비 2. 각종 기부금 3. <u>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</u> 4. 기타 수입 ② <u>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·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</u>	법인의 ‘(예비)사회적기업’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정관상 요건을 갖추기 위함.